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고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7. 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4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0일(월)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광명시 동물 보호 조례안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3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찬 성 자 : 조희선·김정호·고순희·김익
찬·오윤배·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철도정책실이 만들어졌을 때 광명시직위표에 철도정책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 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로 되어 있음.
- 과가 아닌 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시장 직속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철도정책실은 전환하고자 함
- 또한 철도정책실이 새로 생겼음에도 첨단도시교통과장이 겸임하는 것도 맞지 않아 조례로 개정함(차후에는 미래전략실 등의 팀으로 전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철도정책실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기타 참고자료 : 불 입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감사실”을 “감사실, 철도정책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철도정책실, 시민안전국”을 “시민안전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u>감사실</u>,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건설위원회 가. <u>철도정책실</u>, <u>시민안전국</u>,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10. 11. 25>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 -----. ② -----. 1. ----- 가. ----- <u>감사실</u>, <u>철도정책실</u> ----- ----- 나. ----- 2. ----- 가. <u>시민안전국</u> ----- ----- ----- 나. 삭제 <2010. 11. 25> 3. ----- 가. ----- 나. ----- 다. -----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건설위원회

가. 철도정책실,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10. 11. 25>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7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이길숙·김익
찬·고순희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속한 청년정책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지원(안 제14조)
-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요촉진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청년모니터요원 활동 수당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 및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능력 개발

나. 고용 확대

다. 주거 안정

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마. 생활 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 보호

아. 시설 설치 및 운영

3.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

3. 관내 청년정책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광명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⑫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비영리민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능력 개발) 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확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 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 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① 시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

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15조(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년지원 업무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수탁기관 등)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30일

발 의 자 : 이윤정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김정호 의원

1. 제안이유

- 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인권·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광명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①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3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조희선·김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광명시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5.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이 위원 중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 공동단장이 함께 지명한 3명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제 1호와 제 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 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 고용경제국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그 밖의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지원단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일자리소통관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사무국) 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직원은 지원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④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지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2개월마다 단장이 소집하는 날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 ③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지원단은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시장은 지원단의 활동비, 간담회, 특강, 현장방문,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7일

발 의 자 : 이길숙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고순희·조화영 의원

1. 제안이유

-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채무 취약계층의 악성 채무부담으로 근로의욕의 상실이 국가적인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어
- 서민들의 가계 빚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복지, 일자리, 채무관리 상담수요가 향후 지속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의 금융구제를 위한 「광명시 채무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서민금융 안전대책 강화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회의, 수당, 위탁 등(안 제3조 내지 제7조)
- 지원체계, 협의체 구성, 경비의 지원 등(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채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광명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채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채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의 채무 및 채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 금융 접수 및 처리 사항
7.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고용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시의회 의원 2명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광명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 연계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에납금

2.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는 법원의 파산, 회생, 면책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같은 항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1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고순희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동물 복지 계획 수립(안 제5조)
- 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2조)
- 동물보호센터 감독(안 제13조)
- 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안 제18조)
-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9조)
- 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안 제2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협의 : 고용경제국 생활위생과 의견반영

나.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복지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 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3.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평가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사항)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를 초과하여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제6조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적합성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구성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⑧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점수가 총 100점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 지정 갱신이 가능하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 등 기타지역에 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 할 수 있다. 단, 겨울철(12월 ~ 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등의 관리·교육·홍보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적극적인 관리·교육·홍보 등을 위해 동물 간호복지사·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2조제8항 관련)

1. 동물보호센터 종합평가표

심의위원 : (인)

구 분	심사대상	배 점	평가점수
총 점		100	
1.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		50	
2.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50	

2.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계			50	
일 반 기 준 (23)	설비 시설 (10)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였는가? (단,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제외)	10	
	경비 시설 (3)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용 방범시설,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가?	3	
	위생 시설 (7)	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배수시설이 있는가?	4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3	
개 별 기 준 (27)	처리 시설 (3)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안락사)공간이 있는가? (단,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 가능)	3	
	진료실 (5)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었는가?(진료대, 소독장비 등)	3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2	
	사육실 (8)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가?	3	
		동물별 적합한 사육실 구조 및 운동장이 있는가?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2	
	격리실 (9)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가?	3	
		온도·습도 조절, 채광·환기가 가능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2	
		전염병 전파로부터 별도 구획 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외부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가?	2	
	사료보관실 (5)	청결하게 유지되며, 해충이나 쥐 등을 방지하고 있는가?	3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 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가?	2	

3.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항 목			배 점	평가점수
계				50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50)	보호센터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5)	관내 위치		3~5	
		관외 위치		1~2	
	인력 구성(15)	상근 수의사 (4)	있음	4	
			외부 위탁	2	
		포획 구조 인원(4)	2명 이상	4	
			2명 미만	1	
		시설 위생 및 동물 간호 인원(2)	1명 이상	2	
			없음	0	
		사무 관리자 유무(2)	2명 이상	2	
			1명	1	
		야간(휴일) 관리인원 유무 (3)	있음	3	
			없음	0	
	운영계획의 합리성(15)	유기동물 처리 과정 관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	상	7~10	
			중	4~6	
			하	1~3	
		보조금 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금 조달 계획 유무	있음	5	
			없음	0	
	입양 활성화 방안(10)	입양 및 입양 홍보 계획	상	5~7	
			중	2~4	
			하	1	
		동물보호단체 유기적 연대 방안 유무		3	
	봉사자 활용 방안 (5) -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상	4~5	
			중	2~3	
			하	1	

[별표2]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1조 관련)

1. 산출 계산식

$$1\text{마리 당 } 1\text{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times \text{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도시화·비도시화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가) 포획비는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물품 금액 등으로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할 수 있다.

나. 치료비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

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 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3.22.] 제14조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3.22.] 제22조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30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김정호·조희선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이 201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은 변함이 없었음
- 우리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시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너무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시, 충남, 전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현재 광명시는 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에 3명이 공무원, 2명이 외부인원이고 회의 시, 공무원 3명, 외부인원 1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시민단체 및 시의회의원 등 외부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과반수 참여가 되어서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안 제4조제1항제4호)
 -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기재
 - 업무추진비 매달 사용건수 및 합계 기재
 - 집행장소 및 주소 기재(주소는 “도로명” 까지 기재)
 -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 기재
 - 카드사용, 현금사용 기재
 -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구분
 - 집행시간 기재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2) 타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자료 : 불 임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이상 7명 이내”를 “7명”으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명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2명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정고공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등 1명
4.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5.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별지 제2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중전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집행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기관운영				
시책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연 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장소 (주 소)	집행 목적	집행 금액	집행 대상	대상인원 (명)	결제방법 (카드/현금)	구분 (기관/시책)
	합계								

- ※ 참고 : 1)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
2) 집행대상 : 관내 언론관계자,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등으로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부시장·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 내역	4.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제1호 서식)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7명----- ----- ----- 다음 각 호의 사람 ----- -----
<신설>	1. 광명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기록 작성하여 보존한다.

는 2명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정고공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등 1명

4.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5.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 ----- 별지 제3

호 -----

-----.

관 계 법 령 발 첩 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30일

발 의 자 : 조희선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김정호·오윤배·고순희 의원

1. 제정이유

- 선출직공무원인 시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국외여행전후에 여행관련 정보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녀오고 있음
- 반면에 선출직인 시장의 경우는 국외여행 전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동행인이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몇박 며칠로 가는지? 등 의원들도 알 수 없음
- 또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시장의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공무원으로 전원 구성되어있음. 시의회의원의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이 과반수임
-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감사는 사전견제는 되지 않고 사후견제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견제의 의미가 거의 없음
-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이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주고 국외여행 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 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장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안 제4조)
-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안 제5조)
-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여행계획서 공개(안 제9조)
- 여행보고서 제출(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국외여행규정,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

나. 기 타 : 부천시장 국외여행 공개사례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② 시장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여행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여행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심사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공개)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여행의 목적·동기·기간·경비·여행자 동행 인원 및 여행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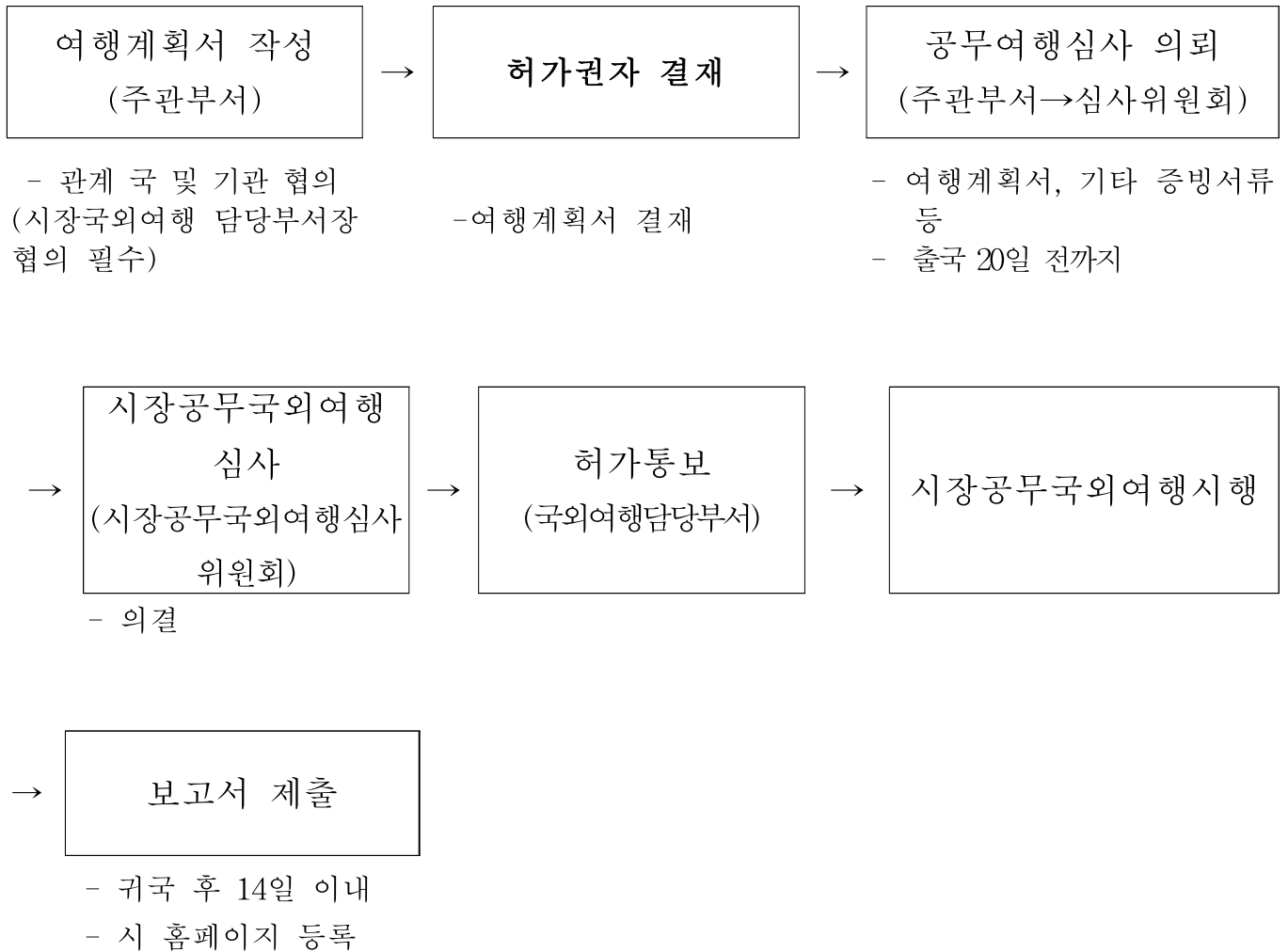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장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시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해외시찰 · 견학 · 참관 · 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시장의 여행 동행자·동행 인원의 적합 성	- 여행동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수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여행목적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한 산출 지급 여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별지 제1호서식]

시 장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 행 목 적						
여 행 동 기 및 배 경						
여 행 기 간	. . . ~ . . . (일 간)					
여 행 국						
여 행 경 비 부 담 기 관						
동 행 여 행 자(명) 및 경 비(천 원) 내 역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직 급)	여 행 경 비	비 고
한 글	영 문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 (1) 여행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2) 여행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여행일정(시간대별 작성)

월 일 (요일)	도시명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방 문 기 관 명	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다. 여행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 원)

소 속	성 명 (직 급)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기타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일 = \$	\$×일 = \$	\$×일 = \$		

라. 자료수집계획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기간	자료수집내용

마. 여행효과

-
-

[별지 제2호 서식]

○ ○ ○ 항 공 사

G. T. R

항공운임증명서

일 자 _____
발행번호 _____

여 행 자 성 명	
등 급	
구 간	
운 임	

상기 요금은 국제항공요금표 및 규정에 의거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정부 및 해당국의 요금 및 환율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해외여행부 일부인(VALIDTION)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G.T.R

발 행 처 : _____

일 부 인

해외여행자 서약서

1.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품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출장목적에
파급, 전파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3. 국가보안업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출장 시 반출한 모든 자료는 유
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
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
입하지 않는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
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국외여행담당부서장
에게 통보한다.
7. 명량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광명시

(직) 광명시장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의 결 서

심 사 항 목	적 합	부 적 합	비 고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 협의 등			
※ 적합 · 부적합 난에 “○”으로 표기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성 명 날인			

귀국보고서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박 일)		
여 행 국		도 시 명	
여행경비			
보고서작성자			
여행동행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1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고순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광명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근거인 법 및 조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함. 즉, 관련 조례가 통과 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사례가 빈번하여 이런 사례를 없애고자 함(시책에서 조례 및 예산 등을 사전에 시정소식지 및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의원들이 심의 후 부결을 시키면 공공의 적이 되는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해서 조례심의에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있음)
- 사례로는 최근에 제정된 「광명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안」 그리고 채무상담센터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담센터부터 만들고 운영예산을 그 다음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역순서로 진행하여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다. 동시제출 금지(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 입

나. 기 타 : 타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자료(불 입)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제정 및 찬성 의결되지 않은 동의안 등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제정 및 찬성 의결되지 않은 동의안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미제정 및 미의결 상태에서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홍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중 신규예산 및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심의 5일 전에 사업세부 계획서 및 사업세부 내역서를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물품의 교체(1천만 원 이상), 리모델링공사(1천만 원 이상)등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 관련 기존 물품 및 리모델링공사 전 현장 등의 칼라사진을 예산심의 5일 전에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동시제출 금지) ① 시장은 광명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해서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미제정 및 미의결된” 조례안·동의안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경우
 2. “미제정 및 미의결된”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시정소식지(광명소식) 및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9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김익찬 의원

1. 제정이유

- 광명시 식품등 기부를 받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없이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안 제4조)
- 기부식품등의 관리(안 제6조)
- 교육(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불 임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
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광명시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광명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을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

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3] <개정 2017. 1. 31.>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 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광명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자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9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나상성·이길숙·
김익찬·조화영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천여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수화 활성화(안 제5조 ~ 제6조)
-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등(안 제7조 ~ 제8조)
-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표창(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 입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수화”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화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는 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화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수화 활성화)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화를 체계화하고 농문화 보존 육성하는 등 수화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수화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광명시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30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나상성·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설치 및 자격기준을 정하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제1조 ~ 3조)
-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규정함(안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규정함(안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규정함(안 제 6조 ~ 7조)
- 지원사업 규정함(안 조례 제8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자격기준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 입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수준)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 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 지원 사업
3.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2회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2. 입소자가 시설정원의 10인 미만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지원센터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생활복지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2)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5)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
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다. 생활지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간호조무
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조리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n(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⑤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9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나상성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는 주차장확보율이 매우 낮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정받은 주차구획에 지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이 더욱 가중시켜 시행하지 않았으나, 주차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
 -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지정받는 자의 동의 없이 주차할 수 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단위나 분기 또는 연 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지정받는 차의 동의 없이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 내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6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조화영·이길숙·김익찬·
조희선 의원

1. 제정이유

- 도심 속 쾌적한 경관을 위해 야영장이나 천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수질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음
- 또한, 최근 공공기관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상태임
- “물놀이 시설이나 시민체육관의 바닥분수처럼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들이 늘어가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유지관리(안 제5조)
- 수질 적정기준(안 제6조)
- 수질조사 및 공개(안 제8조)
- 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주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홈페이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제6조 관련)

수질 항목	적정 기준	비고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mg/L	

【관계 법령 발췌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신설 2017. 1. 19.>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의2.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7의2.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영업을 말한다.